

< 2월 주요 상담사례 >

- (어문) 얼마 전 외국소설의 번역본을 토렌트로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위 소설의 번역가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황하여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외국 소설의 원저작자에게 문의해보니 한국어 번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를 고소한 번역가도 역시 무단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저작권 침해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 위 사안에서 번역가의 번역본은 외국소설을 ‘번역’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에 해당하므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번역본을 허락 없이 토렌트를 이용하여 복제, 전송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
 - 한편,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2조 참조).
 - 외국소설의 작가는 자신의 소설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번역가는 외국소설의 작가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에 번역본을 작성했어야 한다. 번역가의 이러한 행위는 외국소설의 작가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 이처럼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인 번역본을 복제 및 전송하는 행위도 번역가에 대해서 저작권법위반을 구성하는지, 즉 무단으로 작성된 2차적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를 때, 2차적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해서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여 별개의 저작물을 만들 것을 요구할 뿐, 원저작자의 허락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 대법원 또한 “가사 공소외 1의 저작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1)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2)

- 결국 위 사안에서, 번역가가 외국소설의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 번역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역물은 2차적저작물이며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번역물을 번역가의 허락 없이 복제 및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가사 공소외 1의 저작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시스템(챗봇)에 가장 많이 묻는 질의 >

순위	질의
1	저작권 등록 문의
2	등록 절차
3	저작권법 상담사례
4	신규 권리등록
5	등록 일반
6	저작권(일반저작물) 등록 신청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7	저작물 조회
8	어떤 저작물이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9	전화상담 운영시간
10	저작권(이용 일반 및 제한)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챗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챗봇: <https://chatbot.gov.kt-aicc.com/client/GCL-01-C-00000221-0001/chat.html>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의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김정철_고딕체’ 글꼴로 작성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 사례('26년 2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